

대학원 학사내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홍익대학교 대학원(이하 ‘본 대학원’ 이라 한다)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학사운영 및 교육과정

제2조(수강신청) ①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학과(부)장과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강의시간표 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개강 후 2주일 이내에 수강신청서를 정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다.

③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학생이 본교 내의 타 대학원에 개설된 2부(야간)강좌를 수강하고자 할 때에는 수강신청기간 내에 이를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학칙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본 대학교 학사과정 제3학년 이상 학생이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기간 중에 학과장과 대학원 교과목 담당 교수의 승인을 얻어 수강신청서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

⑤본 대학원의 타 학과(부) 교과목은 석사학위과정에서는 9학점,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에서는 12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초과하여 신청 할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학기당 이수학점) ①한 학기에 이수하여야 할 학점은 최저 6학점이며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석사학위과정 3학기를 초과한 자, 박사학위과정 4학기를 초과한 자, 또는 석·박사학위통합과정 6학기를 초과한 자는 6학점 미만으로도 수강할 수 있다.

②석사학위과정 4학기를 마치고 학위 취득에 필요한 소정학점(논문 및 작품 제외)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박사학위과정 4학기,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8학기를 마치고 학위취득에 필요한 소정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다음 학기에 부족한 학점을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수업료를 납입하고 재수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1. 3학점 이하 신청자 -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2. 4학점 이상 신청자 - 당해 학기 수업료의 전액

제4조(선수과목 이수) ① 삭제 <2020.9.1.>

②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에 입학한 학생 중에서 논문지도교수 또는 학과(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총장이 지정하는 선수과목을 학사학위과정에서 9학점 이하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9.1.>

③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 중에서 논문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총장이 지정하는 선수과목을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④선수과목은 입학 후 첫 학기부터 이수하여야 하며 선수과목 학점은 학기당 9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⑤선수과목의 성적은 C⁰(2.0) 이상을 받아야 이를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⑥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할 학생이 이를 이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⑦ 삭제 <2020.9.1.>

제5조(학점 무효처리) 결석일수가 한 학기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1.>

제6조(학점인정) ①학기당 수업일수의 1/2 이상을 수학하고 학기 도중 입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교과목 담당교수가 입영 전까지의 성적을 감안하여 학점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②제적 또는 퇴학한 자가 동일전공에 재입학하였을 때에는 제적 이전에 취득한 학점을 통산하여 줄 수 있다.

③제2조제4항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교 학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이 대학 학칙에 정한 졸업학점을 초과한 학점 중 9학점 이내에서 학과(부)장의 심사를 거쳐 석사학위과정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성적이 B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정 2018.9.1., 2019.3.1.>

④타 대학교 대학원 동일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6학점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7조(학점상호교류) ①학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교류를 협약한 국내외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국내 교류 대학의 경우는 매 학기당 3학점까지, 국외 교류 대학의 경우는 매 학기당 9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②본교에 개설된 교과목에 대하여는 타 대학교 대학원에서의 수강을 허용하지 아니한

다.

제8조(연구과정) ①연구과정의 모집시기와 모집전공분야는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

②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2개 학기로 한다.

③연구과정생은 매 학기 최저 6학점 이상 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④연구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2학기 통산 12학점 이상으로 하며 평점 평균이 2.0(C⁰) 이상이어야 한다.

⑤연구과정생이 휴학을 원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1개 학기동안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⑥연구과정생의 등록금은 석사학위과정 납입금을 학기당 취득기준 학점(9학점)으로 나눈 금액에 수강과목의 학점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⑦연구과정생이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경우에는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6학점 범위 내에서 석사학위과정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9조(교과과정) ①학칙 제16조 규정에 따라 각 학과(부)(전공)별로 교과과정을 2년마다 개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문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편할 수 있다.

②학과간 협동과정 및 학·연·산 협동과정의 경우 교과과정 운영을 위한 교과과정 운영위원회를 학과별로 둘 수 있다. 교과과정 운영위원회의 운영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입학전형

제10조(입학전형시기) 본 대학원 입학전형 시기는 매년 2차에 걸쳐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전 기 : 12월 초순

후 기 : 7월 초순

다만, 필요시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구비서류) ①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의 입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자료를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고 소정의 수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본교양식) 1부
2.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부
3. 대학성적증명서 1부

4. 작품자료-미술·디자인계열 해당학과(부)에 한함
 5. 학·연·산 협동과정 지원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서 1부
 6. 수학계획서(본교양식) 1부
 7. 기타 전형에 필요한 서류 및 작품
- ②본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자료를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하고 소정의 수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본교양식) 1부
 2. 대학 및 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3.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
 4. 학·연·산 협동과정 지원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서 1부
 5. 수학계획서(본교양식) 1부
 6. 작품자료-미술·디자인계열 해당학과에 한함
 7. 연구실적평가서(본교양식) 및 연구실적물 사본 각 1부
 8. 기타 전형에 필요한 서류 및 작품

제12조(전형방법) ①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의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1. 필답시험
 - 가. 전공과목(논문) : 전공 전 분야의 기본지식을 측정한다.
 - 나. 영어 : 기본영어 및 전공과 관련된 영어의 독해력을 측정한다.
 2. 실기시험 (미술·디자인계열 해당학과(부)에 한함)
 - 가. 각 전공별 실기고사는 기본적인 조형능력을 측정한다.
 - 나.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작품자료를 제출받아 실기능력을 측정한다.
 3. 수학능력평가 : 지원자의 대학 재학 시 전공과 성적으로 평가한다.
 4. 구술시험 : 전공지식, 입학동기, 적성, 능력, 인격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 ②박사학위과정의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영어 : 전공과 관련된 독해력에 대한 기본을 측정한다.
 2. 제2외국어 : 독어, 불어, 일어, 중국어, 한문 중 택일하되, 전공과 관련된 독해력을 측정한다.
 3. 전공과목(논문) : 전공 전 분야의 기본지식 및 판단력을 측정한다.
 4. 작품자료 또는 연구실적 평가 : 작품사진, 개인전 및 단체전 카달로그, 연구논문 등으로 평가한다.

5. 수학능력평가 : 지원자의 대학 및 대학원 재학 시 전공과 성적으로 평가한다.
 6. 구술시험 : 전공지식, 입학동기, 적성, 능력, 인격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출제 및 채점방법) 총장이 과목별로 2인 이상의 시험위원을 위촉하여 출제 방향, 평가 기준 등을 정하여 출제 및 채점하게 한다.

제14조(합격기준) ①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의 합격기준은 시험 과목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 기준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구술시험의 평가는 각 과 전공교수 1인 이상이 포함된 3인 이상의 교수가 평가하되, 합격, 불합격으로 구분한다. 다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점수화할 수 있다.

제15조(합격자 결정) 대학원위원회에서 모집정원을 참조하여 각 학과(부)별로 심사하고 총장이 합격여부를 확정 발표한다.

제16조(합격자의 등록) 모든 시험에 합격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등록을 필해야 한다.

제4장 자격시험

제17조(응시자격) ①외국어시험은 석사학위과정, 석·박사학위통합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에 수 학중인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②종합시험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단, 총장이 지정 하는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이미 취득한 전과목의 평점 평균이 3.0(B⁰)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0.9.1.>

1. 석사학위과정은 3학기 이상 등록하고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석사학위과정에서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2. 박사학위과정은 3학기 이상 수학하고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박사학위과정에서 27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3. 석·박사학위통합과정 학생은 7학기 이상 수학하고 전공필수과목을 포함하여 60학 점 이상을 취득한 자.

제18조(응시절차) ①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기일 내에 응시원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석사학위과정 학생으로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소정기일 내에 응시원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 학생으로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지도교수와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소정기일 내에 응시원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시험일정)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매년 전, 후기 두 차례 실시하되 당해 학기 학사일정에 따른다.

제20조(출제방법) 외국어시험은 각 과목마다 1인 이상의 시험위원이 출제하고, 종합시험은 각 시험과목별로 1인 이상의 시험위원이 출제한다. <개정 2019.8.1.>

제21조(외국어시험 과목) ① 삭제 <2018.9.1.>

② 삭제 <2018.9.1.>

③ 삭제 <2018.9.1.>

제22조(종합시험 과목) ①종합시험은 해당 전공영역의 기초지식 및 심화지식을 종합평가할 수 있는 2개의 시험과목으로 시행한다. <개정 2019.8.1.>

② 삭제 <2019.8.1.>

제23조(합격기준) ①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각 과목에 대한 성적은 각각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격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9.8.1.>

②외국어계열 전공자가 본인이 전공하고 있는 과목과 동일한 외국어를 응시하는 경우에는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격으로 인정한다.

③외국어시험의 면제 기준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개정 2016.9.1.>

④국제언어교육원에서 해당 외국어강좌를 수강하고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단, 제2항의 해당자는 80점 이상)합격으로 인정한다.

⑤ 삭제 <2018.9.1.>

제24조(재시험) 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재응시 할 수 있다.

제25조(작품심사) ①본인의 작품론으로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석사학위 청구 작품전을 실시하고 작품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학칙 제29조 및 제31조제2항 규정에 의해 본인의 작품론으로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학과(부)는 “별표2”와 같다. <개정 2018.3.1., 2021.3.1.>

③학칙 제36조 및 제38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해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을 위한 작품심사가 요구되는 학과 및 전공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21.3.1., 2021.3.1.>

④작품심사 기준은 학과(부)별 또는 전공별로 정한다.

⑤미술·디자인계열 학과(부)의 경우 본인의 작품론으로 논문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심사받기 위해서 작품 2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학점교환

제26조(학점교환) 본 대학원 학칙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대학원간 학점 교환이 협약된 국내외 대학교는 “별표4”와 같다.

제27조(이수자격) 양교 대학원 재학생은 대학원간의 교환과목을 상대 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제28조(교환이수학점) 국내 대학원에서 수강하여 이수할 수 있는 교환 학점은 매 학기당 3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교환과목내용) ①교환과목은 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으로서, 원칙적으로 당해 대학교 전임교수의 담당과목으로 한다.

②본 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에 대하여는 상대 대학교 대학원에서의 수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수강신청 절차) 학점교환에 의한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①학점교환에 의하여 개설된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 대학원의 학과(부)장

또는 논문지도교수와 협의하여 학점교환에 의하여 개설된 강좌의 수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수강과목이 결정되면 본 대학원에서 소정의 수강신청서 2부를 발급받아 수강과목을 기재하여 상대 대학원에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소속대학원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강과목의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신청서 2부와 사유서 1부를 변경신청 기간 내에 본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개설된 강의에 수강신청을 완료한 학생은 해당 교과목을 개설한 대학원에서 수강한다.

제31조(준수사항) 학점교환에 의하여 상대 대학원에서 수강하는 학생은 당해 대학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2조(도서관 및 연구시설 이용) ①학점교환의 목적으로 상대 대학원 학생이 본 대학원에서 수강하는 경우에는 이 학생은 본 대학교의 도서관 및 연구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도서관 및 연구시설 이용은 해당 교의 이용 세칙에 따른다.

제6장 장학금

제33조 삭제 <2018.3.1.>

제34조 삭제 <2018.3.1.>

제35조 삭제 <2018.3.1.>

제36조 삭제 <2018.3.1.>

제37조 삭제 <2018.3.1.>

제38조 삭제 <2018.3.1.>

제39조 삭제 <2018.3.1.>

제40조 삭제 <2018.3.1.>

제41조 삭제 <2018.3.1.>

제42조 삭제 <2018.3.1.>

제43조 삭제 <2018.3.1.>

제44조 삭제 <2018.3.1.>

제45조 삭제 <2018.3.1.>

제46조 삭제 <2018.3.1.>

제7장 납입금

제47조(납입금) ①다음 각 호의 1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일 내에 응시료 또는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외국어시험
2. 종합시험
3. 논문심사

다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결과 논문을 심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논문 심사료를 반환한다.

② 삭제 <2020.3.1.>

제48조(연구등록) ①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을 수료한 자는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8.31.>

② <삭제 2018.8.31.>

③연구등록기간은 학칙 제35조 및 제44조에서 규정한 논문제출시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장 내규의 개정

제49조(내규의 개정) ①이 내규를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원장이 발의하고 5일 이상 공고한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승인한다.

②이 내규를 시행하기 위해 각 학과(부)별 별도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이 내규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내규 제21조제3항은 시행일 현재 본 대학원 재적생 전체에게 적용한다.

③(경과조치)이 내규의 시행으로 이전의 홍익대학교 대학원 학사내규, 입학전형 시행내규,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에 관한 내규, 대학원간 학점교환제 시행세칙, 대학원 장학금지급규정은 폐지한다.

④(경과조치)이 내규 시행 이전의 홍익대학교 대학원 학사내규, 입학전형 시행내규,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에 관한 내규, 대학원간 학점교환제 시행세칙, 대학원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해 진행된 학사업무는 이 내규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4조는 200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8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17조는 2020년 9월 1일 입학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삭제 <2018.9.1.>

별표2(제25조 제2항) <개정 2018.3.1., 2021.3.1.>

과정	계열	본인의 작품론으로 석사학위청구논문 작성이 가능한 학과(부)			
석사학위	미술디자인계열	금속조형디자인과 목조형가구학과 판화과 디자인이노베이션&테크놀로지학과	도예·유리과 섬유미술과 회화과	동양화과 의상디자인학과 영상·애니메이션학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디자인학부 조소과

별표3(제25조 제3항) <개정 2021.3.1., 2021.3.1.>

과정	계열	학과 및 전공		박사학위청구논문 제출에 요구되는 작품심사 또는 논문게재 요건
박사학위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포함)	이공계열	전학과		학회지(학술지) 논문 1편 이상 게재
	인문사회계열	전학과		학회지(학술지) 논문 1편 이상 게재
	미술·디자인· 공예계열	미술학과	예술학	학회지(학술지) 논문 1편 이상 게재
			동양화 조소 판화 회화	학위청구작품전 개최 및 작품심사 합격
		디자인·공예 학과	디자인계열 : 공간디자인학 사진학 산업디자인학 시각디자인 의상학 색채 공공디자인	학위청구작품전 개최 및 작품심사 합격 또는 학회지(학술지) 논문 2편 이상 게재
			공예계열 : 금속조형디자인 도예·유리 목조형가구학 섬유미술	학위청구작품전 개최 및 작품심사 합격
		영상·인터랙션학과,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학회지(학술지) 논문 1편 이상 게재

별표4(제26조)

학점 교환이 협약된 국내외 대학교	한국	숙명여자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한양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한성대학교
	미국	Central Connecticut State University, New Britai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rlotte Indiana University Maryland Institute, College of Art Washington State University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s Angele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New Paltz		
	영국	Architectural Association School of Architecture Royal College of Art University of Dundee		
	독일	Universität Gesamthochschule Essen(UGE) Pforzheim University Die Staatliche Akademie der Bildenden Kuenste Stuttgart(SAdBK)		
	일본	大阪藝術大學(Osaka University of Arts) 京都造形藝術大學(Kyoto University of Art & Design) 武蔵野美術大學(Musashino Art University) 東北藝術工科大学(Tohoku University of Art & Design) 長岡造形大學(Nagaoka Institute of Design) 筑波大學(The University of Tsukuba)		
	중국	對外經濟貿易大學(University of International Business & Economics) 西安交通大學(Xi'an Jiaotong University) 中央美術學院(Central Academy of Fine Arts) 魯迅美術學院(Luxun Academy of Fine Arts) 東北大學(Northeast University) 渤海大學(Bohai University)		
	캐나다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Continuing Studies		
	프랑스	Université de La Rochelle Beaux-Arts L'école de Design Nantes Atlantique École Nationale Supérieure de Creation Industrielle/Les Ateliers École Speciale d'Architecture		
	이탈리아	Domus Academy		
	스페인	Càtedra Gaudí University polytechnic Catalana		
	네덜란드	Academy Industrial Design Eindhoven(AIVE)		
	덴마크	Aalborg Universitet(Aalborg University)		
	핀란드	Taideteollinen Korkeakoulu(University of Art & Design, Helsinki) HAAGA-HELIA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스웨덴	Mälardalen University Designhögskolan, Umea Universitet(Umea Institute of Design, Umea University)		
	호주	Curtin University of Technology, Perth 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Canberra School of Art 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		
	러시아	Moscow Stroganov Higher School of Industrial & Applied Arts Ivanovo State Power University		
	대만	Tainan National University of the Arts		
	스위스	Lucerne University		
	이스라엘	ezalel Academy of Arts and Design, Jerusalem		